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4.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4.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
- 제출일자: 2022. 4. 1.(금)
- 회부일자: 2022. 4. 1.(금)
- 검토기간: 2022. 4. 4.(월)~2021. 4. 8.(금)

2. 제안이유

- 보육의 공공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두류파크 KCC 스위첸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과 국공립어린이집 고운별·성서·금봉 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른 재계약 추진을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 신규위탁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안)	운영방식	비고
두류파크KCC스위첸 아파트 내 어린이집	두류동 803-44번지 일원	297.84m ² (지상1)	55 (예정)	민간위탁	

○ 재계약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현 운영법인 (원장)	위탁기간
고운별 어린이집	대명천로 101, 105동 1층 (본리롯데캐슬)	194.26m ² (지상1)	30 (23)	사회복지법인 금빛 (이창훈)	2017. 7. 1.~ 2022. 6. 30.
성서 어린이집	성서서로 89 (월성2동)	1,074m ² (지하1, 지상3)	97 (61)	재단법인 YMCA (김진미)	2017. 8. 1.~ 2022. 7. 31.
금봉 어린이집	야외음악당로39 안길 61(두류동)	296.98m ² (지상2)	67 (57)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 (이지안)	2017. 12. 1.~ 2022. 11. 30.

나. 위탁개요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 위탁기간

- 두류파크 KCC 스위첸 아파트 내 어린이집: 2022. 11월~2027. 10월경
- 고운별어린이집: 2022. 7. 1.~2027. 6. 30

- 성서어린이집: 2022. 8. 1.~2027. 7. 31.
- 금봉어린이집: 2022. 12. 1.~2027. 11. 30.
-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4.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6조 및 제7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신설되는 두류파크KCC 스위첸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1곳과 국공립어린이집인 고운별어린이집, 성서어린이집, 금봉어린이집 3곳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두류파크 KCC스위첸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785세대의 아파트 내에 연면적 297.84m², 정원 55명으로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으로 2022년 11월경 개원 예정이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같은 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시설을 무상사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자녀 70%에 대한 우선입소권을 부여하는 등 주민편의제공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법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인 고운별어린이집, 성서어린이집, 금봉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이 각각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9년 7월 인가된 본리롯데캐슬 내 고운별어린이집은 만0세에서 만2세까지 영아를 돌보고 있으며, 현원 23명에 보육교직원 9명으로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2019년 11월 우수등급(A)을 받았고, 적극적인 학부모참여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993년 10월 인가된 달서구 월암동 내 성서어린이집은 만1세에서 만5세까지 영유아를 돌보고 있으며, 현원 61명에 보육교직원 15명으로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2021년 11월 우수등급(A)을 받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과 보육교직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적이고 지역친화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991년 1월 인가된 달서구 두류동 내 금봉어린이집은 만1세에서 만5세까지 영유아를 돌보고 있으며, 현원 57명에 보육교직원 12명으로 2017년 8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은 바 있고, 숲놀이 중심의 자연친화적 자연생태교육과 다문화보육 등 지역밀착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민간위탁 재계약 3건에 대하여 민간위탁기간 동안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달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운영체의 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하여 재계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개경쟁을 하도록 재계약 대상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이상과 같이 본 위탁동의안은 위탁업체 선정과 재계약 건에 대한 심의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제2항 후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사무의 위탁절차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

- 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③④ <생략>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제16조(위탁기간 및 계약)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